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년 6월 23일  
복지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5월 29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5월 29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 
제2차 복지건설위원회(2025년 6월 23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가구 등 무거운 폐기물을 직접 운반·배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가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형폐기물 내려드림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금천구 관내 1인가구 취약계층의 대형폐기물 배출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(안 제28조의2 신설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### 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### 나. 검토의견

- 1) 개정 이유

○ 1인 가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형폐기물 내려드림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함.

## 2) 주요 내용

○ 금천구 관내 1인가구 취약계층의 대형폐기물 배출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(안 제28조의2 신설)

가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

나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

다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라)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

## 3) 검토 의견

○ 본 개정안은 대형폐기물의 배출에 어려움 겪고 있는 1인 가구 취약 세대에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**

**5. 토론요지 : 생 략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**